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교과용 도서(이하에서 “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 자료의 범주를 신설하여 AI 디지털교과서를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정의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의2 신설 등).

II. 검토의견

안 제29조(교과용 도서)는 제1항 및 제2항¹⁾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이동하고 있어 현행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중 제1항²⁾에서 제29조제1항을 인용한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음.

III. 교육부 의견

개정안에 대해서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

-
- 1)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29조제1항**·제31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과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먼저, AI 디지털교과서는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교과서로서 유지될 필요가 있고 2025년 3월 도입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디지털 인프라 개선 등 많은 준비가 진행되나, 현시점에서 법적 지위가 변동되는 경우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임. 특히, 안 부칙 제2조 경과조치는 현재 검정이 완료된 AI 디지털교과서도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 자료가 되도록 규정³⁾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신뢰 보호의 원칙 및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 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임.

또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경우 교육 자료는 국가 수준의 검정 절차 및 수정·보완 체계 등을 거치지 않으므로 내용과 기술적인 면에서 질 관리를 담보하기가 어렵고, 「초·중등교육법」상 무상·의무교육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학생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수 있으며, 교육 자료의 사용도 시도별·학교별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교육 및 학습 격차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더욱이, 교육 자료는 「저작권법」 제25조⁴⁾에 따라 교과용 도서에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 다양한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에 제한이 있어, 양질의 학습 자료로 개발이 곤란한 것으로 설명함.

추가로, 안 제29조의2에서 “교육 자료” 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

3) 안 부칙 제2조(교과용 도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중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교과용 도서가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 자료로 본다.

4)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으며, 문체부 고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함. 교과용 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 송신할 수 있음.

개정안은 ①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 ②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③ 교육감이 정하는 자료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면서 ②에 대해서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⁵⁾,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2조⁶⁾에서는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를 모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조항 간 상충이 있고, 저작물과 교육감이 정한 자료 모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어 학교현장의 부담이 늘어날 우려를 표명함.

(전문위원 이 화 실)

5) 안 제29조의2(교육 자료) ① “교육 자료”란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3. 그 밖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 자료를 선정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1.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1. 9. 24.>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